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권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제5조 【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6조 【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제7조 【담당자 지정 및 공표】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 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9조 【공공저작물 개방】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 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7조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위촉한다.

④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
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제공 권고
4. 공공저작물의 관리·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19조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제1장 총 칙	5
— 제1조(목적)	6
제2조(적용범위)	8
제3조(정의)	10
제4조(기본원칙)	13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15
— 제5조(저작권 귀속)	16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18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21
—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22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25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27
—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	28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29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30
제12조(제공비용)	37
제13조(이용료 징수)	38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39
제15조(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41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43
제17조(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44
제18조(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45

목 차

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 47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48
제20조(출처의 명시)	50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51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53

[CHECKLIST]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대상 체크리스트 54

[붙임1] 공공저작물의 제공·관리 프로세스 (국가·지자체)	57
[붙임2] 공공저작물의 제공·관리 프로세스 (공공기관)	58
[붙임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예시)	59
[붙임4]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등록 방법	60
[붙임5] 온라인상의 공공누리 적용 (예시)	61
[붙임6] 오프라인상의 공공누리 적용 (예시)	62
[붙임7]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예시)	63
[붙임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절차	66
[붙임9]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안내 (예시)	67
[붙임10]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68
[붙임11] Q&A로 보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75
[붙임12]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고문	79

1 총 칙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 적

-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공공저작물의 취득 및 제공·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제시
- 공공저작물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이용원칙 및 기준 제시

법적 근거

- **【저작권법】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저작권법】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저작권법】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①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가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에 적용
 - ※ 저작권법상 국가/지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 자치단체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 ※ 저작권법상 국가/지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 없음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② (이하 생략)

공공기관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
 - ※ 알리오(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기준(2015년 : 316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하여 자율적 시행 가능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원에 시행 사실을 알려야 함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련성을 고려, 공공기관의 범위를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 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 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공공기관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시, 군, 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

-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유이용 대상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이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도 자유이용 개방 가능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7가지의 권리

저작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제11조~제13조)과 저작재산권(제16조~제22조)의 각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전부 또는 일부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7가지의 권리 중 전부 혹은 일부의 권리취득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였으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아니하여 공동 소유인 경우
-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 권리만을 양도받은 경우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취지로 계약하였으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물의 유형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구분	내용
저작물의 예시(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p>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p>

<p>2차적 저작물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원저작물 + 창작성 = 2차적저작물</p> <p>원저작물에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등을 한 새로운 창작물</p> </div>
<p>편집저작물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 · 문자 · 음 ·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 라 함)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함</p> <p>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p> </div>
<p>비보호저작물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보호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자유이용

- 지침 상의 ‘자유이용’ 이란 이용자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공공저작물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작성되므로, 비용부담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 6.)

공공누리

-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 표준 라이선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5호에 따른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23호)

☞ 공공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0~36쪽 참고

【제4조】 (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어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
 ※ 환경부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공공저작물 관리·제공

공공저작물 관리 원칙

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시행 2014.12.26.] [환경부훈령 제1121호, 2014.12.2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공공저작물 제공 원칙

- 공공기관 등은 저작권법 및 다른 법률,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또는 영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하여 자유이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번역·편곡 또는 개작이 가능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적 이용을 제한할 수 없음
- ※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공공저작물의 중복성(☞ 22쪽)으로 인하여,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을 동시에 고려한 업무처리 필요

▣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저작물 제공 원칙

-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공공저작물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8~52쪽 참고

2 공공저작물 취득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제5조】 (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저작물'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 1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 저작물 작성에 대한 구체적 지시 또는 승낙이 있거나 통상적인 직무인 경우
- 2 공공기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 ▷ 파견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 고용관계는 보수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음
- 3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작성될 것**
 - ▷ 근무 시간 및 장소와는 상관없이 저작물 작성 자체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 업무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작성하였지만,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작성인 경우 불인정
- 4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 1) '명의' (이름 또는 기관명)
 - ▷ 작성자의 명의로 기재된 경우 불인정이 원칙이나, 업무분담과 책임소재를 위해 기재된 경우 인정
 - 2) '공표'
 - ▷ 미공표 저작물이라도 공표할 예정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서 인정되지만, 자유이용대상은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에 한함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함
-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 저작물 작성 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서울중앙지법 2006.10.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2]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면 법인 등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은 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로서 기대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저작자의 기명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아닌 법인 등에게 귀속하는바, 여기서의 ‘일반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인 경우도 포함한다.

- 양도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 취득
 - 양도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취득
 - 저작재산권 전부를 의도하였으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명시하지 않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외한 일부 권리 취득
 - 저작재산권 공동 소유 또는 일부 권리 취득

-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보유한 권리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이 관리주체에 해당
 -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의 제3자가 원저작자인 경우(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만을 보유)에도 ‘공공저작물’로서 동 지침 적용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취득**

관리주체

【제6조】 (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귀속 관계 명확화

- 공공기관 등은 제3자에게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는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
-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한 제공

▶ 계약준비단계

-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계약 준비 단계부터 명확하게 하여야 함
 - 조달청 공고준비단계에서부터 제안요청서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

【참고】 위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이나,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확보 가능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단서

■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항 명시

■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서 작성 단계

•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경우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그 취지를 명시

※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반드시 별도 특약을 통해 양수·양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함

예) “갑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갑은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에게 있음)

▣ **저작권법 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②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재산권 일부를 양도받는 경우

– 저작권재산권 양도규정을 두지 않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 소유한 경우 또는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으려 하였으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일부 권리 보유 시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

•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공공저작물 개방 시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인 초상권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권리의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

예) 저작권재산권을 전부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의 초상권이 담겨있는 사진저작물을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 발생

☞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서’ 는 63~65쪽 참고

▶ 사후적 권리처리

– 계약서 등 권리관계 파악 후 저작권재산권 추가 확보를 통한 공공저작물 제공

– 당초 저작권재산권 전부 확보의 취지로 계약한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취지로 추가 계약

– 저작권재산권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 확보를 통해 공공저작물 제공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는 59쪽 참고

-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취득

저작권재산권의 귀속 여부 판단

▶ **민간 이용 활성화가 바람직한 경우**

- 해당저작물이 민간에 제공되어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거나 민간에서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

- ① 국민에게 널리 보급할 목적을 가진 저작물
(예 : 지자체 관광안내 책자, 정책 안내소식지 등)
- ②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국민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저작물
(예 : 외국의 법, 제도 등의 번역물 등)
- ③ 교육적 목적을 가진 저작물
(예 : 독립기념 관련 자료,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교재 등)
- ④ 기타 민간에서의 수요가 예상되는 저작물 등

▶ **창작자·용역수행자의 활용이 더 바람직한 경우**

-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 저작물의 성질과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창작자(용역수행자)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자(용역수행자)에게 저작재산권 일부를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

- ① 공동으로 창작하였으나, 연구수행기관의 지속적인 활용이 필요한 저작물
(예 :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민간 심리상담사가 공동으로 창작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영상저작물 등)
- ②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연구수행기관이 기획하고 창작한 저작물
(예 : 용역수행기관 등이 기금 등 공적재원을 지원받아 제작한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 등 일부 저작권재산권을 연구수행자에게 귀속)
- ③ 연구수행자의 추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 또는 상품 개발이 예상되는 저작물
(예 : 신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시 연구수행기관이 보유한 원천 소스가 사용되어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등)

[참고] 국가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 계약 체결 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 체결 금지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의 취지에 따라 국·공유재산 외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창작하는 저작물 또한 창작자(용역수행자)에게 저작권 전부 귀속 불가

3 공공저작물 관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제7조] (담당자 지정 및 공표)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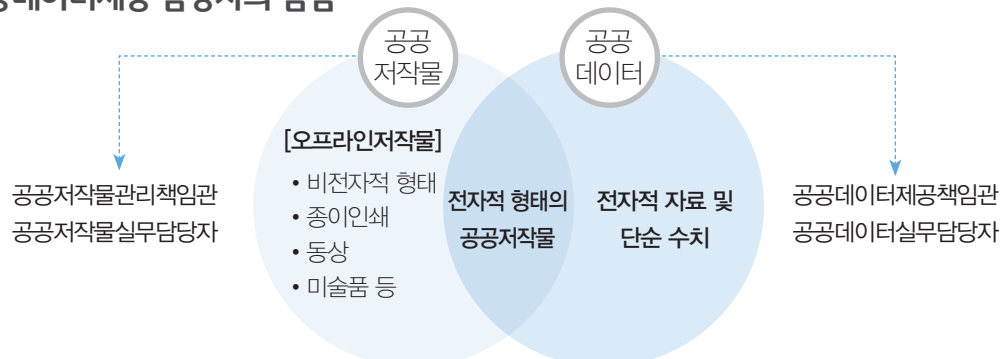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 각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공표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공공저작물실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저작물관리 업무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별 자체적인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 기록물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등의 겸임 가능
홈페이지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및 조직도에 담당관에 대한 정보 제공 • 담당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변경된 사항을 게시

TIP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의 겸임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서, 공공저작물과의 중복 및 업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의 검임을 명시

※ ‘15년 11월 30일 기준,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1,090건 중 저작물에 관한 제공 거부결정이 701건으로 약 64% 차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2015. 12.)

※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지침 제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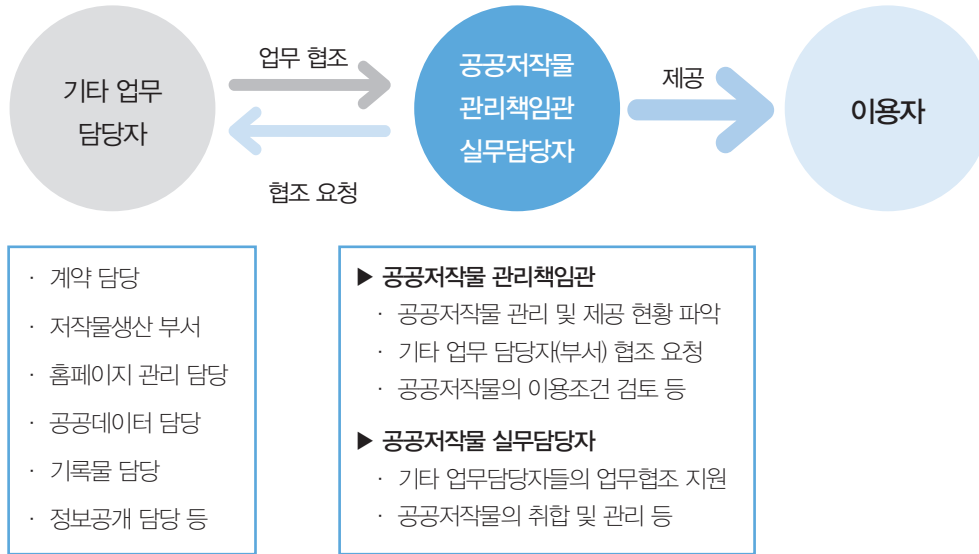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 ▶ 해당기관의 저작물 작성과 저작재산권 취득 시 권리 확보 안내
- ▶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가능성 검토 및 제공 총괄
-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관련 기관 자체의 공공저작물 관련 정책 수립
- ▶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제공 및 이용 요청 응대
- ▶ 공공저작물 관련 설명회 및 워크숍, 기타 교육·연수 참여
- ▶ 제공(개방)중인 공공저작물(저작권)의 보존 관리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

-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기타 업무 담당자들의 협조 필요



【제8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 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 · 관리

공공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존

예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형태

A	B	C	D	E	F	G	H	I	J
1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 관리 현황								
2	연번	저작물 종류	저작물명	공표일	보유중인 권리	보유 형태	개방 여부	공공누리 유형	적용 사유
3	1	어문저작물	OOOO 현황 및 수요조사	2015.01.01	저작권 일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문서파일(전자, 비전자)	일부 개방	제2유형	2차적저작물작성권 미확보
4	2	사진저작물	제O차 OOO 사업설명회	2015.01.02	저작권 전부	이미지파일(전자)	전부 개방	제1유형	
5	3	영상저작물	OOOOOO 홍보영상	2015.01.03	저작권 전부	영상파일(전자)	전부 개방	제1유형	
6	4	어문저작물	OOOO 연구보고서	2015.01.04	저작권 전부 저작인격권 전부	문서파일(전자, 비전자)	미개방	미적용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
7	5								
8	6								
9	7								
10	8								
11	9								
12	10								
13									
14									

저작권재산권 관리 목록

-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작성 서식

기관명 부서명 성명

관리 번호	담당자	유형	계약 연도	저작물명	저작권 관리 정보				원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 적용유형
					저작권 보유	양도	이용 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001	홍00	보고서	2014	송려문 복원공사 원료보고서		○						제3유형
		도면		송려문 복원 실측도면			○					제2유형
		인화사진		송려문 복원공사 사진	○							제1유형
002	김00	보고서	2015	금정산성 원료보고서				○			미부착	
003												
004												
005												

- 공공기관 등은 관리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 정보 및 저작물을 보존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구분		기산	보호기간
공공기관 등의 단독저작물		공표시	70년
공공기관 등의 공동저작물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자와의 공동저작물	공표시	
	개인과의 공동저작물	저작자 사후	
위탁 또는 양도에 의한 공공저작물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자	공표시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저작자 사후	
영상저작물		공표시	

4 공공저작물 제공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 [제9조] (공공저작물 개방)**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공(개방)

-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저작물 등록 시,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소스코드를 적용하여 저작물 등록
 - ※ 공공누리(www.koglor.kr) 자료실에서 소스코드 제공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책

- 각 기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저작권정책을 통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적용에 따른 자유이용대상임을 게시
 - ☞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안내는 67쪽 참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제공

-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
 - ※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를 붙여 개방하는 것 외에 미공표 저작물에 대한 개방요청에 응하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변형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의무

[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또한 변형,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출판이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공저작물 제공 가능
 - ※ 정기간행물 납본 지침(국립중앙도서관)상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적용 의무화
 - ※ 출판 및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로 청구 가능 (37쪽, 제12조 제공비용 참고)

-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취지에 반함
 - ※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 설정계약은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적 계약 행위

출판 및 발행 등의 제공

제3자의 독점적 권리 인정 계약 제한

- **저작권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적용의 필요성

-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인 ‘공공누리’ 를 적용하여 개방

1. 공공누리의 개념 및 유형

-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 ※ 이용허락조건을 보다 간소화하여 자유이용의 범위를 넓히고 공공저작물에 한정된 사용으로 신뢰성을 높이며, 공공기관의 면책약관을 포함
 - ※ 민간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저작물 이용허락표시로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사용되고 있음

공공누리 이용허락조건			
기본 표시	이용허락조건 표시		
	출처표시(기본조건)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출처표시의무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의무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 중에 하나를 선택 적용

공공누리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제1유형] 출처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금지

2. 공공누리 적용방법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및 공공데이터법의 도입 취지상 저작권재산권을 전부 보유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이 원칙
 - ※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은 공공데이터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영리적 이용 제한 금지)에 반하는 면이 있으므로, 해당 공공저작물이 공공데이터법상 제공 예외사유(제17조)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공공기관이 보유한 경우라면 그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개방 형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부착

☞ 공공누리의 등록은 60쪽, 온·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방법은 61~62쪽 참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이용대상 예외사유로서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아니함

공공누리 적용의 예외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공공누리 부착 추진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자(공동소유자)의 미동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공동소유)하고 있는 제3자가 해당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개방(공공누리 적용) 미동의

공공누리 적용 불가(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불가)

자유이용 예외사유의 해석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
- 국방이나 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등이 어떤 사유로든 잘못 공개된 경우와 같이 그 저작물의 활용 또는 보급이 위와 같은 의미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된 국방부의 보도자료 등은 제외

②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1)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각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개인정보는 제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 2)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상 비밀’의 의미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 또는 비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는 것(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해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상기 제한사유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도입취지상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

2.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도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위원회(제17조)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방을 권고하기 위함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

-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 연구결과의 왜곡이 우려되는 경우
- » 시험문제 개방에 따른 문제은행방식의 운영이 사실상 곤란해지는 경우
- » 국외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 저작물의 판매로 인한 수입이 기관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후 공공누리 미적용 또는 신탁을 통한 선택적 제공

※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절차는 66쪽 참고

공공누리
유형 선택
요령

1. 국가·지방자치단체

(1)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한 경우

저작자	구분	공공누리 유형 선택
국가·지방자치단체	업무상 저작물	공공누리 제1유형
공동 저작·민간 저작	(양도에 따른) 저작재산권 전부 취득	

(2) 자유이용대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지만, 제4호에 해당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누리 적용 가능

(3)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뿐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지 않은 경우

- 자유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공누리 적용허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공공누리 적용 후 제공(개방) 가능

※ 저작권자가 동의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 적용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는 59쪽 참고

(4) 자유이용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① 변경 이용에 민감한 공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상업적 이용에 민감한 공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③ 기관의 유지·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공공누리 [제1유형] 곤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후
제2유형~제4유형 적용**

※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법과의 충돌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것으로 했지만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추가적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 양도계약을 통해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 추진
- 추가적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권리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공공누리 적용 추진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는 59쪽 참고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 소유의 경우

-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공동 소유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에 의한 공공누리 적용 가능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는 59쪽 참고

2.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시행

※ 국가·지자체 (2)자유이용대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35쪽)를 적용하여 판단

【제12조】 (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공공누리를 부착하여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 ※ 필요최소한의 실비란 제공 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TIP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용료’의 차이

▶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 공공저작물 제공 시 제공방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예 : 출력 시 발생하는 제본, 잉크, 용지에 대한 비용 등)

▶ 이용료

- 공공저작물 제공 시 저작물의 특성상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비용
(예 : 기관에서 제작한 수익상품으로서 해당 저작물 이용 시 부과되는 비용 등)

【제13조】 (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이용료 징수

- 공공기관 등은 국·공유재산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이거나 기타 자유이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탁하거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 가능

※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68~74쪽 참고

국유재산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지식재산(저작권등)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①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업 이관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아닌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

【제14조】 (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개방이 곤란한 경우에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를 보완

공공저작물의 신탁 제도

공공저작물 신탁 활용 사례

- ① 무료 개방보다 유료 개방이 적합한 경우
(예 :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수익상품의 개방 시 기관 운영의 어려움 발생 등)
- ②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이용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예 : 공공저작물의 이용 성과물을 확인,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 ③ 저작권산권 공동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 : 공동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합의로 신탁관리를 하는 경우 등)

※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료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저작권 이용허락 및 민간 유통을 대행하고 저작권 권리처리를 지원

공공저작물 신탁관리기관

- 현재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된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시스템 'ALRIGHT' 운영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ALRIGHT'



- ① 권리신탁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탁
- ② 신탁 저작물 관리 : 시스템을 통해 신탁 저작물을 전시하고 민간에서 활용토록 홍보 및 유통
- ③ 이용허락 요청 : 개인, 기업, 기관 이용자로부터 신탁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신청을 접수
- ④ 이용허락 : 권리신탁 기관을 대신해 저작권 이용허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
- ⑤ 이용현황 보고 및 저작권이용허락 침해 대응



- ▶ 이용 허락신청 후, 유료일 경우 기승인 이후 15일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하며, 무료일 경우 기승인 이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저작물을 이용 하실 때에는, 이용신청 허락을 받은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각 기관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의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대한 제공 중단(또는 이용 중단 요청) 등의 조치 가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공 중단

자유이용 제공 중단 사례

- ①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예 :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출판행위를 한 경우 등)
- ②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예 : 일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0조(법정허락)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발생한 경우 등)
- ③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 :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제공된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으로 제3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④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 :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출처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 ⑤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예 : 자유이용으로 제공된 사진을 불법 광고에 이용하여 제공 기관 및 사진 속 유형물의 가치나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공 중단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따른 대응조치 가능

- ✓ 저작권 침해의 기간
-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 ✓ 침해의 빈도수
-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 ✓ 침해의 상업적 목적
- ✓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경고장 발송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

알선 또는 조정 신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법정손해 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같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형사고소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제16조】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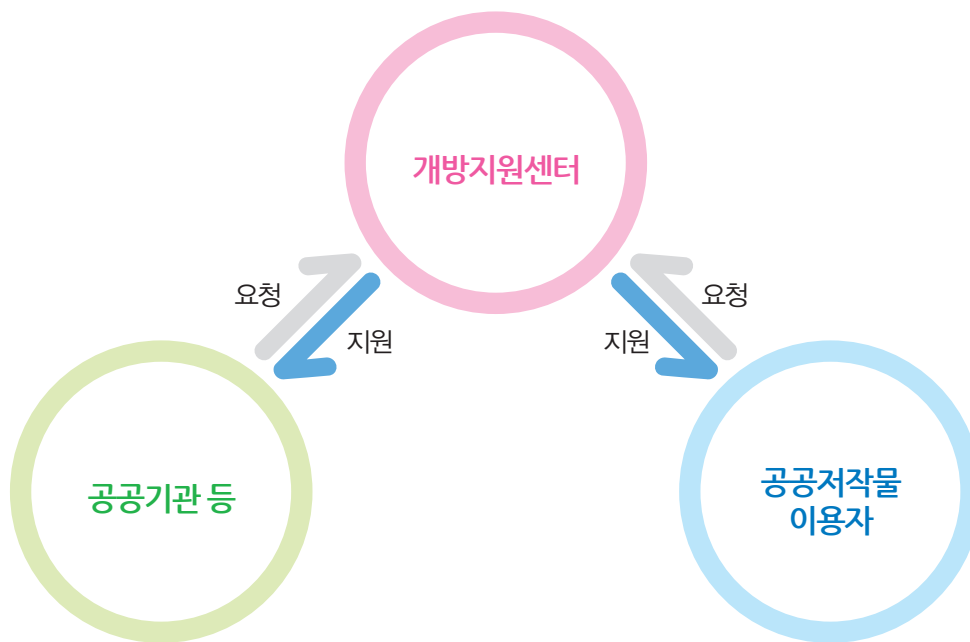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1670-0052)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공공기관 담당자의 저작권 관리 인식 제고 및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방문교육, 컨설팅, 권리관계 확인 및 확보 등)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권리 관계 확인 및 저작권 상담 등

- 【제17조】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 ④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
 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통한 자유이용 개방 권고
 4.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위원회의 기능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위원회는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되거나 기타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검토 후 유형별 공공누리 적용에 따른 자유이용 개방 권고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위원회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

- 【제18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 진단 후 진단에 따른 결과 통보 및 개선 권고

공공저작권 관리지수 진단

목적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수준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하여 공공저작물 개방 격차 해소 및 공공저작물 확대 개방 기반 조성
근거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필요성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이행실태를 관리지수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후속 지원을 통한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 개방 촉진
평가대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평가대상은 매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따라 증감가능 ※ 평가대상은 공공기관에서 국가·지자체까지 확대 추진
평가	각 기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이행수준 평가(공공저작권 관리지수 진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평가결과 반영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 분석보고서를 평가대상 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관은 공공저작물 관리에 있어서 평가결과를 최대한 반영

-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

예 시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평가 항목

평가 항목

- 1 공공저작물 관리 및 제공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2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저작물에 대해 사후적인 권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가?
- 3 저작재산권의 귀속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 4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 5 책임관 및 담당자는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과정에 연 1회 이상 참여(이수)하였는가?
- 6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연간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가?
- 7 보유한 공공저작물이 데이터베이스(보호기간, 현황 조사 포함)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 8 공공누리 제2~4유형이 적용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을 하였는가?
- 9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정책이 반영되어 있는가?
- 10 공공누리 이용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5 공공저작물 이용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제19조】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함

공공누리 제 1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처 표시 의무

-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 ①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② 연구보고서의 연구성어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 ③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3. 공공기관의 면책

-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공공누리 제3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표시 의무

- 출처표시는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37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공누리 제1유형~제4유형에 모두 해당

▣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표시 가이드 예시

- ① 출판물 : 출판물의 표지 또는 내부에 출처 표시(연구물은 인격권 존중을 위해 연구진의 성명 또한 함께 표시)
- ② 영상물 : 엔딩크레딧 또는 자막 등으로 출처 표시
- ③ 음원 : 디지털파일 또는 파일명에 출처 표시
- ④ 사진 : 사진 내 적절한 위치에 식별 가능한 출처 표시(사진 내에 출처표시가 곤란한 경우 사진 하단에 표시)
- ⑤ 제품 : 제품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표기(또는 패키지에 표기)
- ⑥ 기타 SNS 등 : © 마크 등을 활용하여 단순화하여 간략하게 출처 표시

※ 출처는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 표시로 인한 이용의 곤란함이 우려될 경우 저작자 동의 후 표기 방법, 위치 등의 조절 가능

(예 : 사진에 직접 출처 표시를 할 경우 상업적 이용의 어려움 발생 등)

【예시】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각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제21조】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누리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변경일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용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경도 금지

변경 시 주의사항

■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TIP

동일성유지권 침해 예시

- ①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② 연구보고서의 연구 성과나 통계 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 ③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은 동일성유지권 침해 가능

※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

① 서울고법 1994.9.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 되는가 또는 녹화방송 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 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정도,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의 순번, 비중, 주어질 질문의 내용, 범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출연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취급으로 기만당하였다고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출연자로서는 제작자 측으로부터 방송내용에 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이 있어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 수정편집에 협력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나) 방송출연계약에 따라 60분 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위해 63분에 걸쳐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출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수정하여 40분 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의 그 출연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방송사는 그 고의에 의한 불완전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연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

②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제22조】 (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담당부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 02-2669-0041)

**한국저작권
위원회
알선 또는
조정**

TIP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2, 2486)

◎ **한국문화정보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확산을 위한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 공공저작물 관리와 관련된 상담, 교육 실시, 공공누리 운영 총괄 등

※ 담당부서 : 공공저작물부 (☎ 1670-0052)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의 등록 및 관리, 상담 등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 저작권 상담 대표전화 (☎ 1800-5455)

CHECKLIST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대상 체크리스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물이 공공저작물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고, 업무상저작물 이거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아야 하며,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확인사항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비보호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비보호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 12 쪽](#)

■ 저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확인사항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의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 저작자의 사후 7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개인과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개인 공동저작자의 사후 7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제작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위의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보호기간 내 저작물(데이터베이스 포함)입니다. 만약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6 쪽](#)

■ 업무상 저작물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의 기획 하에 작성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저작물이 기관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공표되지 않아도 해당).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공기관 등의 업무상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저작물을 작성한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16~17 쪽](#)

■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면)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어느 정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전부를 취득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일부만 취득한 경우)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을 통해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 (일부만 취득한 경우)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나머지 권리에 대한 추가 계약(양도) 혹은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18~19 쪽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에 따른 자유이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이용허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유이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공누리 적용이 제한됩니다. ☞ 31~35 쪽

※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의 이용허락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공공누리 적용이 제한됩니다. ☞ 19 쪽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살펴 이용조건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합니다.

■ 제1유형 적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자로부터 저작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 • 저작권 일부만 양도받았으나,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위의 요건 중 1개지만 충족해도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36 쪽

■ 제2~4유형 적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변경 또는 상업적 이용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누리 제2~4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으나, 변경 또는 상업적 이용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36 쪽](#)

공공저작물은 무료제공이 원칙이나 공공기관 등의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신탁하거나 직접징수가 가능합니다.

■ 이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자유이용(무료)으로 제공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국·공유재산이거나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신탁을 통하거나 직접 징수가 가능하며, 해당 저작물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38~39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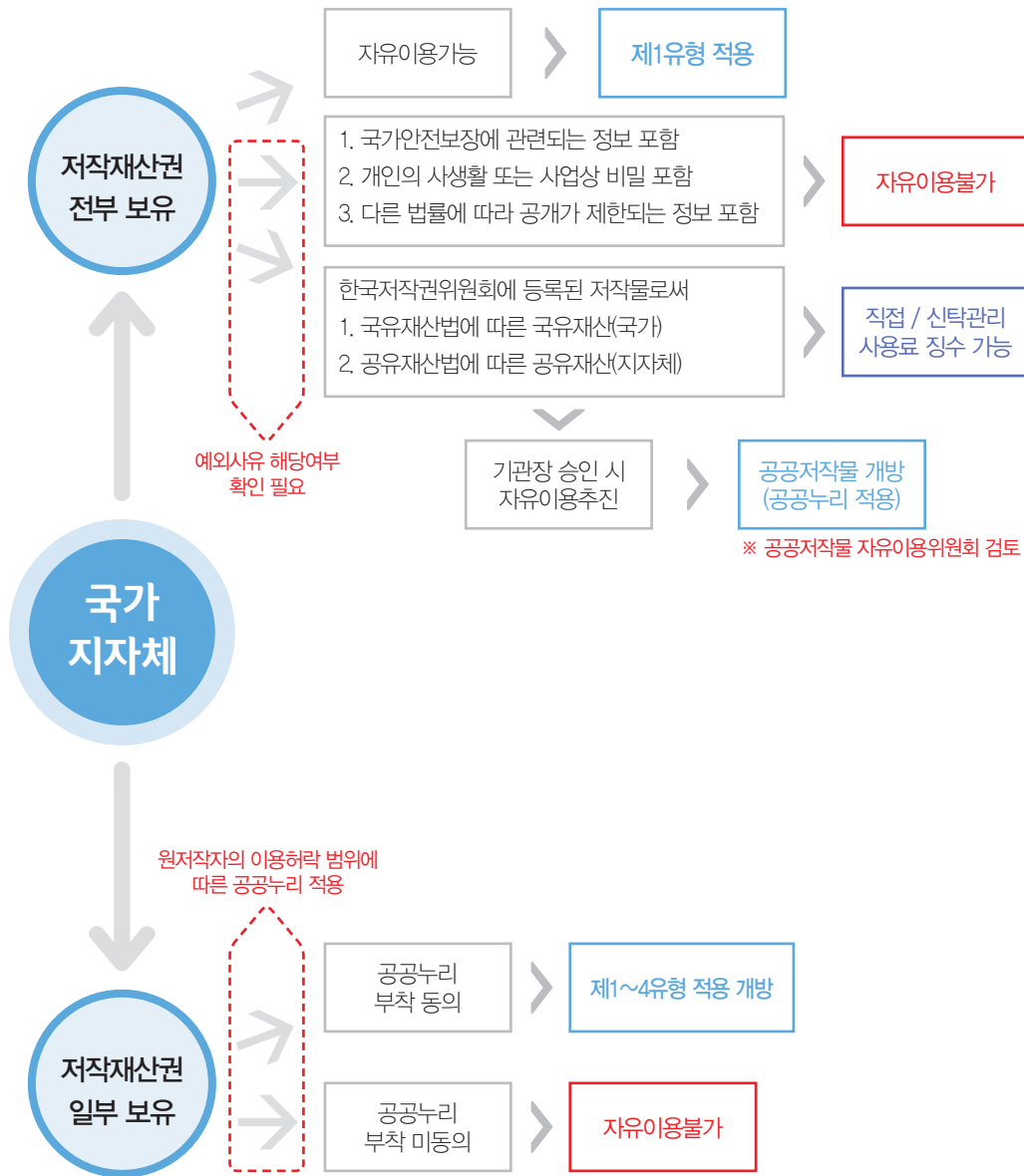
공공누리 적용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저작권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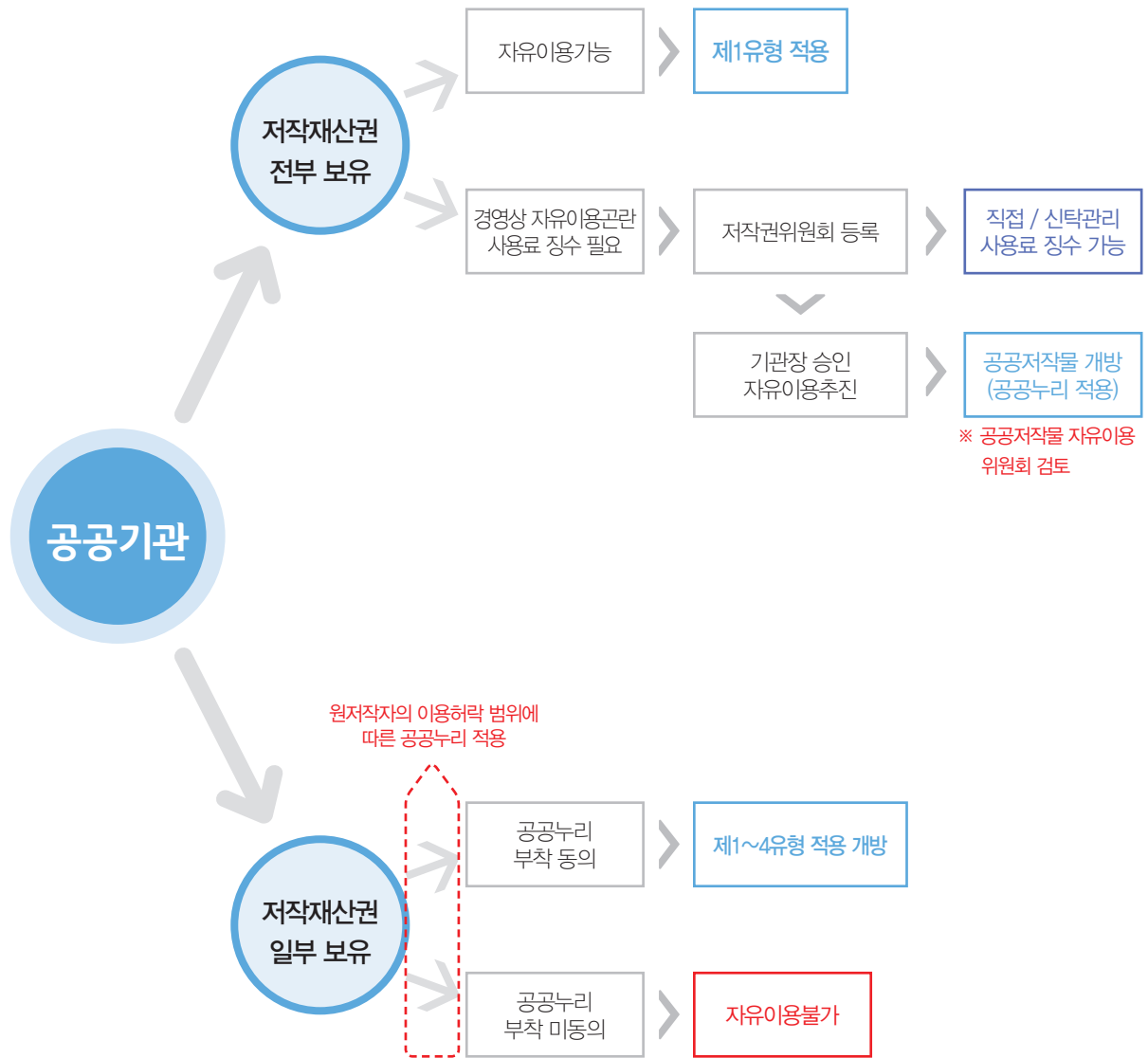
확인사항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정보를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 해당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25~26 쪽](#)

붙임 1 공공저작물의 제공·관리 프로세스 (국가지자체)



붙임 2 공공저작물의 제공·관리 프로세스 (공공기관)



붙임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예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 기관(개인)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저작물 표시**

- ▷ 저작물명 :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 기관명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인)

붙임 4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 기관별 사이트에 게시물 작성 시 공공누리 유형마크 적용

- (방법1) 공공누리 포털에 공지된 HTML 공통코드 복사 및 붙여넣기
- (방법2)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적용

※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란?

기관별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javascript 기반 코드로써, 게시물 작성 시 공공누리 유형 선택화면을 제공하며, 원클릭만으로 공공누리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방법3) 공공누리 포털에서 유형마크 다운받아 이미지 적용
- (방법4) 자체 개발 적용
 - ※ 공공누리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공공누리 유형마크 규격과 문구를 기본으로 자체 사이트별 환경에 맞도록 개발하여 게시물별 적용 가능

◎ 온라인 수집 연계신청 절차

- (STEP 1) 공공누리 포털 로그인 후 메뉴 상단의 '공공기관 저작물 등록' 메뉴 접속
- (STEP 2) 지정된 양식에 따라 공공저작물 정보 연계(수집) 신청
 - ※ 공공누리가 적용되는 사이트 및 메뉴(게시판) 정보 등록
- (STEP 3) 등록된 내용은 마이페이지 > 나의 공공누리 저작물에서 확인/삭제
 - ※ 공공누리 연계는 사이트 내 메뉴(게시판) 단위로 진행되며, 메뉴별로 최초1회 신청 이후 자동 연계됨
 - ※ 기존에 연계되고 있거나, 한번 신청(연계)된 메뉴는 추가 신청 불필요
 - ▶ 공공누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붙은 게시물 정보를 수집/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개별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상세내용 공공누리 포털(www.koglor.kr) 참조)

오프라인 등록

◎ 책자 형태 저작물 공공누리 적용방법

- 오프라인 책자 형태(연구보고서, 간행물 등)
 - 공공누리 마크 다운로드 :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
 - 공공누리 유형은 간행물의 우측 상단에 표기
 - 간행물의 위쪽 1cm, 오른쪽 1cm 공간배정
 - 간행물 크기와 상관없이 공공누리 유형별 표준화된 크기 적용
 - ※ 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크기, 위치 조정 가능
- 책자인쇄용
 - (PDF) 인쇄자료 초안을 인쇄업체에 넘길 때 기관에서 결정한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송부한 후, 오프라인 책자 형태 가이드라인을 안내 부착
- 온라인서비스용
 - (PDF) 아크로벳 프로그램으로 편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책자 형태가이드라인 준용하여 부착 편집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부착하되, 이용자의 이용조건 준수를 위하여 유형에 대한 설명 명시
 - (한글) 한글 프로그램에서 메뉴 [파일] → [공공누리 넣기]
유형 결정 및 그림만 표시 선택 → 오프라인 책자 형태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부착

◎ 책자 이외의 오프라인 형태의 저작물

- 팸플릿, 행사포스터, CD, DVD등 기타 저작물
 - 유형에 따라 공공누리 마크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자유롭게 부착

붙임 5 온라인상의 공공누리 적용 (예시)

산업활용

전통문양 디자인 >

- 디자인 문양
- 형태별 문양
- 용도별 문양
- 활용 디자인
- 전통문양활용
- 활용 가이드
- 문양의 이해
- 3D 콘텐츠
- 문화데이터
- 지원사업

디자인 문양

원시자료의 디자인 정형화를 원칙으로 한 기본디자인과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응용형태의 확장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자연산수문

문자문

기하문

복합문

기타문

전체 | 가동빈가문 | 개구리문 | 개문 | 거북문 | 공작문 | 기러기문 | 기린문 | 까마귀문 | 나비문 | 닭문 | 도철문 | 돼지문 | 말문 | 매미문 | 물고기문 | 박쥐문 | 뱀문 | 벌문 | 범문 | 봉황문 | 사슴문 | 사신문 | **사자문** | 새문 | 새우문 | 소문 | 십이지문 | 앵무새문 | 양문 | 어린발래문 | 용문 | 원숭이문 | 원앙문 | 잉어문 | 주작문 | 쥐문 | 참새문 | 코끼리문 | 토끼문 | 학문 | 해태문 | 현무문 | 기타

✓ 전체(6)
▼ 2D 문양(6)
▼ 3D 문양(0)

문양코드 ▼
검색

불비상(965)

문양사용신청 시 문양코드복사 후 입력해주세요. 문양 코드 복사

기본디자인

크게보기
이미지 다운로드

원천유물

불비상

원시문양

불비상

문양정보

문양 명칭 : 불비상

문양 구분 : 원시문양(2D)

국적/시대 : 한국/현대

원천유물명 : 불비상

소장기관 : 한국문화정보센터

원천유물 재질 : 석재

OPEN

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불비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AI 파일 등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또는 이미지 활용을 통한 제품 홍보를 원하실 경우, 이용허락에 대한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절차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문의 : 02-3153-2843)

6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붙임 6 오프라인상의 공공누리 적용 (예시)



붙임 7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예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 (이하 “양도인” 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 (이하 “양수인” 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 이라 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저작물명

저작자 : 기관(개인)명

권리 : [저작재산권 일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저작재산권 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input type="checkbox"/> 정액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분할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정률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예 : 월)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매출액 <input type="checkbox"/> 매출이익	_____ %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_____ 년 ____ 월 ____ 일
	<input type="checkbox"/> 분할	- 1차 :
		- 2차 :
		- 3차 :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권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 년 ____ 월 ____ 일

양도인 : (인)

생년월일 :

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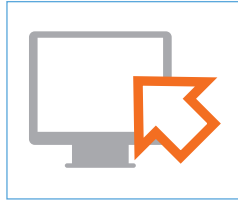
양도인 : (인)

생년월일 :

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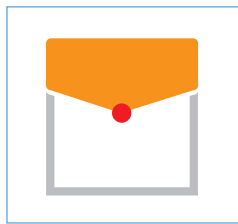
※ 본 해설서에서 제시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와 다른 약정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참고하거나 기관의 자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함

붙임 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절차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 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갖추시면 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더욱 쉽고 간편해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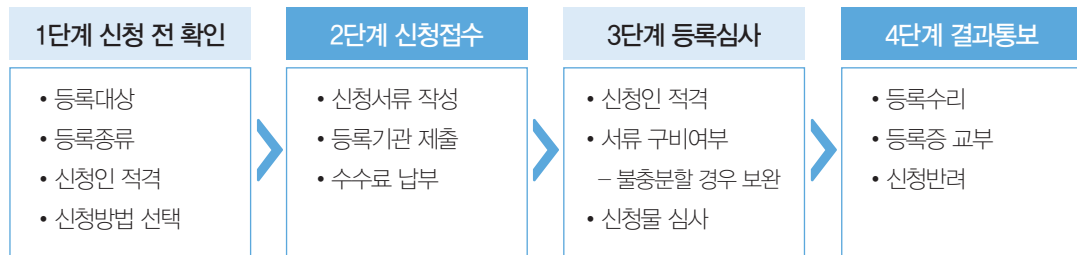


오프라인 등록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맞춤형 서류안내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메뉴를 통하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의 확인, 신청접수, 등록기관의 심사 및 결과통보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 진행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면제

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법 제63조 제3항, 법 제90조 및 제98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수수료 면제

붙임 9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안내 (예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을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발행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성명) (연락처)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성명) (연락처)

붙임 10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1.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

다.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 2013. 9. 23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개정 2015. 3. 6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료 징수) 정보원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음악저작물의 전송서비스 사용료) ① 주문형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액 × 이용자 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이용자"는 회원제 운영의 경우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고,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월간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제"는 명칭과 유·무료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고 2) "매출액"이란 저작물의 해당 서비스로 발생하는 사용료, 광고료, 회비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회비, 광고수입,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음)

비고 3)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정보원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하 같음)

비고 4) "월정액"과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월정액 : 저작자인 경우 62.5원, 실연자인 경우 31.25원, 음원제작자인 경우 250원
- 기여계수 : 저작권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원제작자인 경우 10%

②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저작물의 단가"는 정보원과 공공저작권을 정보원에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비고 2) "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비고 3) 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③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의 “기여계수” 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④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신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 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 사용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비고 2) 무선인터넷의 “기여계수” 는 다음과 같음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음악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상기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로 한다.

제4조(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서비스 사용료) ①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고 1) “기여계수” 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비고 2) “할인율” 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음악저작물 위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영상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비고 1) “기여계수” 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③ 음반자판기에 대한 복제사용료는 각 1곡당 복제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곡당 복제사용료 = 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 기여계수 ÷ 1매당수록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기여계수” 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④ 시뮬레이션 게임기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사용료 = 곡당 사용료 × 수록곡수

비고 1) “곡당 사용료” 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80,000원, 실연자인 경우 140,000원, 음반제작자인 경우 560,000원

2. CD-ROM으로 제작되는 가정용 게임기 사용료 = 출고가 × 기여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비고 1) “기여계수” 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멜로디 IC CHIP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4%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 조정계수

비고 1) “조정계수” 는 CHIP 출고가 중 음악저작물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⑥ 노래반주기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영업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곡당단가” 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 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6,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12,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2. 가정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작동하거나, CD-ROM 또는 DVD 등 매체타이틀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곡당단가” 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또는 반주용 타이틀 등의 복제 · 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2,4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4,8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3.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주로 전문 연주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전문연주인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곡당단가” 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10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회비 × 3.5% ÷ 수록곡수 × 50/100

비고 2) “판매수량” 은 회원수를 말한다.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 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1,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2,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4. 반주음악을 구현하는 단말기(하드웨어)에서 온라인 화선 등을 통하여 메인 DB서버에 구축된 음악데이터를 전송받아(스트리밍에 한함)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다기능 단말기 포함)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용의 경우

가. 전송서비스 사용료 : 매출액 × 4.5% × 음악저작물 관리비용

비고 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사업을 운영하여 각각의 서비스 이용업소에서 징수한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함. 다만, 서비스 이용 1개 업소의 월사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함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5,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10,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⑦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소비자 판매가격 × 5% ×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용 × 제작수량

비고 1)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비매용 출판물에 대하여 1부 1곡당 하한가는 5원으로 한다.

3.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0,000부까지	30,000부까지	50,000부까지	100,000부까지	300,000부까지	500,000부까지	500,000부초과
7,500원	15,000원	25,000원	40,000원	60,000원	75,000원	100,000원

제5조(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서비스 사용료) ① 강연 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로그램을 국내외 복제·배포한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홈비디오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시 사용료 = 매출 × 0.9%
2. 방송 후 그 방송대분을 이용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시 사용료 = 공급금액의 0.88%
3. CD-ROM Title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85%
4. DVD, VCD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15%
5. 그 밖에 경우의 사용료 = 공급금액의 1.23%

② 일반도서, 선집류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26,250원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21,000원
1연 이용시	15,7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전편 이용시	52,500원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1,680원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200자 원고지 1매당	1,680원

비고 1) 발행부수가 20,000부 이상일 경우에는 부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함

③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장르별 사용료 기준금액 합계 × 발행부수 ÷ 10,000

비고 1) 단,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8,925원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7,350원
1연 이용시	5,2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전편 이용시	17,850원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575원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200자 원고지 1매당	575원

제6조(사진 및 미술저작물의 복제 등의 서비스 사용료) ①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신문광고	중앙지(일간/스포츠)	돌출	150,000원	150,000원
		1-9단	225,000원	175,000원
		10-15단	300,000원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150,000원	100,000원
잡지광고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225,000원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차량광고	기차, 지하철, 버스 등	6개월 미만	200,000원	150,000원
		6개월 이상	250,000원	200,000원
	TV광고(CF)	6개월 미만	200,000원	
		6개월 이상	300,000원	
카탈로그	표지(표1) 내지(표2~4)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	
날장인쇄물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100,000원	

포스터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150,000원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캘린더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1만부 미만	250,000원	
		5만부 미만	300,000원	
	5만부 이상	350,000원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225,000원	
		5만부 미만	275,000원	
		5만부 이상	325,000원	
	탁상용	1만부 미만	150,000원	
		5만부 미만	175,000원	
		5만부 이상	200,000원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3개월 미만	200,000원	150,000원
		6개월 미만	250,000원	200,000원
		6개월 이상	300,000원	250,000원
간판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250,000원 300,000원	
디스플레이	1개 장소	3개월 미만	175,000원	
		3개월 이상	225,000원	
	2개 장소이상	3개월 미만	225,000원	
		3개월 이상	275,000원	
POP, 데코 레이션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150,000원 200,000원	
그 밖의 판촉물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100,000원	
패키지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175,000원	
액자용 인화	20 * ×30 * (50.8×76.2cm)해당		125,000원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전			75,000원	
인터넷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100,000원	5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110,000원	

비고 1) “서브” 는 해당광고 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이하 같음)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참고서, 서적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60,000원
단행본, 원간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백과사전, 도감, 사전	표지 내지		75,000원 50,000원	
사보, 뉴스 레터, 기내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100,000원 75,000원	
화보			100,000원	
CDE타이틀, 노래방배경			8,200원	

제7조(그 밖의 사용료) ①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 규정의 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전에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추후 정산한다.

제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Q&A로 보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Q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을 명시된 이용조건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은 명시된 이용조건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용조건 외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저작물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Q 민간에서 공공누리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공공누리 제도는 공공저작물에 한정합니다. 민간 저작물의 경우 CCL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민간 저작물에까지 공공누리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변형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 일부 제한을 할 경우, 이용자(국민)에게 항의가 들어오면 다시 제1유형으로 바꿔주어야 할까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라면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자유이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기타유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바꿔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정책상으로는 제1유형으로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해당 담당자로서는 1유형으로 공개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개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누리 제2유형이나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어 제1유형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이용자가 공공누리에 올라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표시는 공공누리 마크로 표시해야 하는 건가요, 텍스트로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이용자는 출처표시를 텍스트로 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 명시를 위하여 제공자(저작권자)가 붙이는 것입니다.

Q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도 기관에 문의하여 제공을 요청하는 편인데,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면 제공 기관에 문의할 필요 없이 부착된 유형에 따라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별도의 제공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Q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저작물마다 공공누리를 부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선은 앞으로 생성될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자산권 확보와 공공누리 부착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기존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부착을 이루어나 가면 될 것입니다.

Q 소식지를 만들어서 회원동정을 신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회원들 사진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일일이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유이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저작권asset권을 양도받을 때 저작인격권도 양도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asset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이나,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나 성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가기 때문에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블로그나 SNS에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 적용되나요?

공식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 및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에도 적용됩니다.

Q 기존까지는 기관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일선에 보급하기 위하여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출판 설정을 하여 보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출판권 설정 및 기관과의 별도 계약 없이 출판사에서 바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교수학습 자료 역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인 경우에 제3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출판·발행하여 소정의 실비 수준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민간을 통해 판매대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사용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나요?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동일한 유형을 부착하여 다시 제공하는 '재이용허락' 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면 다른 이용자들은 표시된 출처에서 개별적인 이용만이 가능합니다.

Q 제작시기가 오래 지난 자료는 일일이 저작자들을 찾아 양도계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건가요?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자 확인이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예전자료이더라도 양도계약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도계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 공공기관의 문서 보존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계약서들은 대부분 폐기되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확인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개방지원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1670-0052)

Q 사실 1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구매나 발주할 경우, 계약서는 따로 만들지 않고 구두로만 동의를 받은 후 원고나 사진 등을 받아서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나 사진 등의 저작권은 기관과 창작자 중에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결국 모든 업무 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작물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지만, 이 경우는 그 저작물을 구매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이용하겠다는 것이지 저작권까지 양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제공 업체가 저작권을 양도하게 되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도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저작권을 소액에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공누리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자유이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지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권리관계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용허락동의를 구하셔야 최소한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Q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건가요? 홈페이지 관리부서인지, 아니면 정보공개 부서인지, 개방 담당자에 대한 명확한 안내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전담 부서 및 담당자를 업무의 편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은 전담부서 및 담당자의 지정이 어려울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겸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보통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구윤리에 따라 도표, 그래프, 이미지, 인용구 등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데,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기관이라도 그 인용한 자료는 해당 저작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법 또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의 경우에도 인용된 사진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가 있다면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의 출판물은 공공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구소 등에서 판매하는 발간물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연구소의 발간물은 출판사와 계약 시 관례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향후 출판사의 권리인 출판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연구소에서 자체 출판하는 저작물은 출판권 등 제 3자의 권리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 때문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의 연구 관련 출판물 발간이 주 업무이고,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발간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라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연구보고서의 경우 기관에서 창작한 업무상 저작물이지만, 실제 발간하는 과정에서 삽입되는 표지 디자인의 저작권자는 따로 있는데, 이러한 발간물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해도 될까요?

먼저, 표지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이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 를 통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 동의가 어려울 경우, 표지디자인이 적용되기 전의 연구 보고서 형태(한글, PDF파일 등)로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임 12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 - 23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 등” 이라 한다)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하 “공공저작물” 이라 한다)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1. 명칭 및 기본 표시 도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은 “공공누리” 로 하고, 영어로는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이라고 하며, 공공누리를 상징하는 기본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는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p>[제1유형 : 출처 표시]</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제2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p>[제3유형 : 제1유형+변경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p>
<p>[제4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3. 공공누리 표시 위치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누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가) 온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각의 공공저작물에 대해 심벌마크를 표시하고 우측에 공공누리 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 나)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공누리 심벌마크의 위치와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누리 이용조건

- 가) 공공기관 등은 공공누리를 적용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 표시의무,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등 이용조건을 적절한 방법(예, 심벌마크와의 하이퍼링크)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나) 공공누리 유형별로 이용조건은 붙임과 같다.
- 다) 공공기관 등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 변경 등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경 전 공공누리 표시를 신뢰하여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1: 공공누리 제유형(저작권자 표시)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처 표시 의무

-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 (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 ①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② 연구보고서의 연구성이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 ③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3. 공공기관의 면책

-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붙임 2 : 공공누리 제2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3 : 공공누리 제3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4 :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2016년 2월 16일 초판 1쇄 인쇄

2017년 8월 16일 초판 2쇄 인쇄

2019년 2월 8일 2판 1쇄 인쇄

발행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8층
TEL : 1670-0052

디자인 :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인쇄 : 세종CD

-
- 본 해설서는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www.kogl.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공공누리 홈페이지 → 소식/자료실 → 공공누리 자료실
 - 본 해설서에 수록된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주소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